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4.6.)

조례안,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순 화]

목 차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 6. 23. 시행)으로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안 제2조제2항)
 - 1)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대행
 - 2)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15~3.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성격과 기근이 유사한 위원회에 기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3제1항에 의거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체함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6. 2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내용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1. 6. 10.)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 법령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4조)
(현행)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변경)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나.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맞게 목적 변경함(안 제1조)
-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사항 등 불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2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19조)
 - 1) 적용범위, 식재기준, 보고, 관리대장, 시행규칙

라.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및 비용부담 조문 분리(안 제13조·제14조)

마.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함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생활림

(변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생활숲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27.~3.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제5조제3항)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내용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1. 6. 10.)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 법령 등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 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제안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재기재 및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군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신설(안 제3조의2)
 - 1)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나. 법령 등 재기재사항 삭제
 - 1) 정의, 위원 기능·수당, 가산금, 시행규칙(안 제2조·제4조·제10조·제20조·제22조)
- 다. 실효 규정인 지하수특별회계 삭제(안 제3장(제12조~제16조))
 - 1) 근거: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2) 내용

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나) 개정당시 부칙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2018. 12. 31.까지로 존속기한 만료

라.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등 변경(안 제19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14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 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5.~2.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로 추진된 안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신설과 법령위임이 없는 조례강제규정 삭제 등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재기재 및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군민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제안이유

「하수도법」 개정(2021. 1. 5. 시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위임 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위임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명시(안 제16조2)
-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여 정함(안 제2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제7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2. 8.~2. 2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공하수도 체납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근거 규정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련 법 령

□ 하수도법

□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

□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2. 제안이유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현황

- 시설명 :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 위치 :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 주요시설 : 7ha정도
 - 과원시설 : 1.35ha(사과 1.1ha, 오미자 0.25ha)
 - 공원시설 및 부속건물 등 : 5.65ha

나. 위탁사무

- 과원시설 : 사과 다축과원 시범포 조성 및 교육장 활용
- 공원시설 : 예취작업, 수목관리 등 공원 내 환경정비
- 관리동 및 농기계창고 등 기타부속시설 유지 관리

다. 그 간 운영현황

운영기간	위탁자	재정운영현황(원)			비고
		년도	소득	임대료	
'09년 ~'11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2009	무	없음	공모
		2010	무	없음	
		2011	무	6,600,000	
'12년 ~'14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2012	23,279,047	7,000,000	갱신
		2013	24,827,873	7,450,000	
		2014	19,849,830	5,950,000	
'15년 ~'17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2015	34,833,950	10,450,000	공모
		2016	31,449,133	9,434,740	
		2017	78,314,794	10,964,070	
'18년 ~'19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2018	61,732,240	8,642,510	공모
		2019	93,807,698	13,133,070	
'20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주)거창한파머스농업법인	2020	11,576,700	1,620,730	공모
			25,355,088	3,549,710	

라. 운영계획

- 위탁기간 : 위·수탁체결일 ~ 2025. 12. 31.
- 위탁범위
 - 사과 다축과원 시범포 조성 및 교육장 활용
 - 사과테마파크 부지 및 시설에 대한 관리
- 수탁자선정
 - 수탁자격
 - 거창군 관내 농업관련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나 개인
 - 사과원 자가 조성 유경험자(단체시 5년이상 사과재배 유경험자 2인이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공익성, 시설과 장비 운영능력,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선정

마. 소요예산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나. 향후계획

- 2021. 4. :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21. 4. : 입찰공고
- 2021. 4. : 적격자 선정(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2021. 4. ~ 5.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5. ~ 2025. 12. : 수탁자 위탁운영 실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에서 사과 다축과원 시범포 조성 및 교육장 활용, 사과테마파크 부지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에도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규정과 위탁기간이 되어 있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과 민간위탁기간도 기존 민간위탁 3년, 2020년 1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운영, 관리상의 사유분석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을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